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8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보건복지부장관,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보건복지부장관,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

항에 따른 서류나 그 밖에 소득·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				
나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사·질문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	법 제31조제1항	6	12	20
다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31조제2항	3	6	10